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861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861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110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덕희, 이승채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6.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1104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12. 14. 접수 제163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원고”를 “C”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이수영, 판사 김경진

별지